

남 양 주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 |
|---|-------|
| 선 | 기관의 장 |
| 람 | |



제1860호
2020년 9월 24일(목)

차 례

【 조 례 】

| | |
|--|----|
| <input type="checkbox"/>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 1 |
| <input type="checkbox"/> 남양주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4 |
| <input type="checkbox"/> 남양주시 시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6 |
| <input type="checkbox"/>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 8 |
| <input type="checkbox"/>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 10 |
| <input type="checkbox"/> 남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 11 |
| <input type="checkbox"/> 남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14 |
| <input type="checkbox"/> 남양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18 |
| <input type="checkbox"/> 남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22 |
| <input type="checkbox"/>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6 |
| <input type="checkbox"/> 남양주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8 |

【 규 칙 】

| | |
|--|----|
| <input type="checkbox"/> 남양주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31 |
| <input type="checkbox"/>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 36 |

【 고 시 】

| | |
|---|----|
| <input type="checkbox"/>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금곡지역주택조합)----- | 42 |
| <input type="checkbox"/> 남양주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고시----- | 43 |
| <input type="checkbox"/>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묵현5지구 근린공원)----- | 54 |
| <input type="checkbox"/>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지정 고시----- | 59 |
| <input type="checkbox"/>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늘을중앙공원)----- | 60 |
| <input type="checkbox"/>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공원,전기공급설비)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일패근린공원)----- | 64 |
| <input type="checkbox"/> 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 내용고시[별내동]----- | 66 |

| | | | | | | | | | |
|-----|--|--|--|--|--|--|--|--|--|
| 회 람 | | | | | | | | | |
|-----|--|--|--|--|--|--|--|--|--|

【 공 고 】

| | |
|--|----|
| <input type="checkbox"/> 평내지구 제9호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안) 주민공람공고----- | 68 |
| <input type="checkbox"/> 시범취락(논골1, 동촌)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공람·공고(2차)----- | 69 |
| <input type="checkbox"/> 도로지정폐지공고[와부읍]----- | 70 |
| <input type="checkbox"/> 도로지정공고[진접읍]----- | 71 |
| <input type="checkbox"/> 도로점용허가 내용공고[진건읍]----- | 72 |
| <input type="checkbox"/> 도로점용허가 내용공고[금곡동]----- | 73 |
| <input type="checkbox"/> 도로점용허가 내용공고[다산1동]----- | 77 |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제273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 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9월 24일

남 양 주 시 장 _____

남양주시 조례 제 1770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감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을 “감염병에 걸
린 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정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가목 중 “도과”를 “미준수”로 한다.

제3조(「남양주시 축제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축제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장부 및 부책)”을“(장부 및 문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책은”을 “문서는”으로 한다.

제4조(「남양주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의 개정) 남양주시시사편찬위원회조

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사계”를 “해당 분야”로 한다.

제8조 중 “사계”를 “해당 분야”로 한다.

제5조(「남양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양주

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수피가”를 “나무껍질이”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지주목”을 “버팀목”으로 한다.

제6조(「남양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의 개

정) 남양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제2조제5호 중 “미연에”를 “미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제273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남양주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9월 24일

남 양 주 시 장 _____

남양주시 조례 제 1771호

남양주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양주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실·국장과 공원관리과장”을 “실·국·소장”으로, “자료”를 “자료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3조 중 “한다”를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의 제목“(간사 등)”을“(간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를“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원관리 부서의 과장이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보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제273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남양주시 시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9월 24일

남 양 주 시 장 _____

남양주시 조례 제 1772호

남양주시 시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양주시 시장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허가 취소에 의한 사용료 반환)”을 “(사용료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시장(市長)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남은 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유로 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시장 사용허가 폐지를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일할 계산한다.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③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장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이에 대한 손해를”을 “시장(市長)이 정한 기간 내에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 중 “시타”를 “기타”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사용취소 및 정지)”를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을”을 “사용허가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제273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9월 24일

남 양 주 시 장 _____

남양주시 조례 제 1773호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도시·건설의 제12호란의 제11항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 도시·건설에 제12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 | | | |
|---------------------|-----------------------------------|---------------|---|
| 12의2. 건축물 관리에 관한 권한 | ① 건축물관리계획 적절성 검토 등 | 「건축물관리법」 제11조 | “ |
| | ② 건축물 해체 허가 | 같은 법 제30조 | “ |
| | ③ 건축물 해체 신고 수리 | 같은 법 제30조 | “ |
| | ④ 현장점검 | 같은 법 제30조의2 | “ |
| | ⑤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등 | 같은 법 제31조 | “ |
| | ⑥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수리 | 같은 법 제33조 | “ |
| | ⑦ 건축물 멸실신고 수리 | 같은 법 제34조 | “ |
| | ⑧ 보고 및 검사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 같은 법 제45조 | “ |
| | ⑨ 청문 | 같은 법 제48조제3호 | “ |
| | ⑩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 같은 법 제54조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제273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9월 24일

남 양 주 시 장 _____

남양주시 조례 제 1774호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가목의 “시민안전관”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가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아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시민안전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제273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남양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9월 24일

남 양 주 시 장 _____

남양주시 조례 제 1775호

남양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초등학교의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축하금”이란 초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학교를 말한다.
3. “남양주지역화폐”란 「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의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지원액 및 지원방법)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남양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입학일 기준으로 남양주시에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초등학교 외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① 입학축하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입학 후 6개월 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학축하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가 대상자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① 읍·면·동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축하금을 지급하고,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제273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남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9월 24일

남 양 주 시 장 _____

남양주시 조례 제 1776호

남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남양주시의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2.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란 모 또는 부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3.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매년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한부모가족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3.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5. 한부모가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과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정보제공 사업
2.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사업
3. 직업능력개발 및 훈련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
4.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5. 주거 지원 및 환경 개선 사업
6.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사업
7.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고용촉진)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취업 촉진과 각종 공공 일자리 창출 사업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10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9조에 따른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제273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남양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9월 24일

남 양 주 시 장 _____

남양주시 조례 제 1777호

남양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업무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장기요양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2.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남양주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 처우 개선 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3.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제273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남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9월 24일

남 양 주 시 장 _____

남양주시 조례 제 1778호

남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육성·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제2호의 장애인들이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남양주시에 소재한 단체를 말한다.

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사업 분야에 2년 이상 정기적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나. 상시 구성 회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단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육성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효율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문화도시종합계획수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육성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육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3.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4.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기반 구축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적절한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1.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활동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작업공간 확보 및 지원
4.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지원
5.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장애 유형별 필요한 편의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7조(의견청취) 시장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련 단체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등에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지원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비밀의 준수) 이 조례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제273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9월 24일

남 양 주 시 장 _____

남양주시 조례 제 1779호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센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을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기준에 우선 근거하고, 그 밖의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조례」를 따른다.

제7조의 제목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위원회)”를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협의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센터”를 “지역돌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센터”를 “돌봄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실시”를 “계획의 수립”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센터”를 “돌봄시설”로 한다.

① 시장은 지역돌봄을 강화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위원회의 구성)”을 “(협의체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회”를 “협의체”로, “10명”을 “1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를 “협의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함께돌봄센터 업무 담당 국장”을 “다함께돌봄센터 업무 담당 국장 및 방과 후 아카데미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센터”를 “돌봄시설”로 한다.

제12조의 제1항 중 “위원회”, “위원회”를 “협의체”, “협의체”로 한다.

제13조의 제1항, 제2항 중 “위원회”를 “협의체”로 한다.

제14조의 “위원회”를 “협의체”로 한다.

제15조의 “위원회”를 “협의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제273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남양주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9월 24일

남 양 주 시 장 _____

남양주시 조례 제 1780호

남양주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양주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시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양봉농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밀원식물의 조성·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
6. 꿀벌 질병 방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 및 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사업
2. 꿀벌 신제품 육성·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토종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5.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 사업

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또는 단체 등에게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 등에게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제273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남양주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다.

2020년 9월 24일

남 양 주 시 장 _____

남양주시 규칙 제 832호

남양주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모형과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① 남양주시의회 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모형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깃면의 가로와 세로의 규격은 3대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2. 깃면은 중앙에 무궁화 모형, 무궁화 모형 내에 테두리 원, 테두리 원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속에 "의회"자를 표시하고, 깃면 하단에 "남양주시의회"를 한글 명조체로 표시한다.

3. 깃면의 색상과 무궁화 모형 내의 테두리 원의 바탕은 남색으로 하고, 무궁화 모형과 테두리 원 내의 "의회"자는 금색으로, "남양주시의회"자는 백색으로 한다.

4. 모형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에 따라 별표 1 기준에 맞게 전체의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제작 사용할 수 있다.

②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금실로 장식할 수 있으며, 금실은 깃대와 접하지 않은 깃면의 둘레에 부착하되, 폭은 깃면 세로의 8분의 1로 한다.

③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제3조(의회기의 게양) ① 의회기는 본회의장, 의장 집무실 및 국기 게양대에 게양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국기와 함께 게양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부터 4호까지는 조기를 게양한다.

1. 국경일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2. 1월 1일

3. 현충일

4. 국가장기간

5. 남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 중인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공휴일과 평일은 사무국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국기와 의회기를 함께 게양할 때의 게양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의원배지의 규격 등) ① 의회의원 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의 모
형 및 규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모형으로 하고, 무궁화 모형 안에 원을 그려 “의
회”자를 표시한다.

2. 무궁화 모형의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으로 하고 내부 원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3. 모형과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② 의원배지의 재료는 은 또는 동으로 하되, 휘장 바탕 및 “의회”자는 금색으로 내부 원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 등) 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의원배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교부 받을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제434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20년 9월 24일

남 양 주 시 장 _____

남양주시 규칙 제 833호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남양주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 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 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백만 원 이하의 징수결정

③ 남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경우 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억 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 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 추정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천만 원 이하의 공사, 2천만 원 이하의 제조·용역, 5백만 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백만 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2항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의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 공사, 물품 제조·구매 및 용역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⑤ 시의회의 경우에는 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단체장, 실·국장, 관·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부시장 : 추정금액 20억 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 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1건당 5억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국장 : 추정금액 10억 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 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1건당 3억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관·과장 : 추정금액 1건당 1억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는 실·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건당 추정금액 2천만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관·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기타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전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의 한도는 별표 3에 따르며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는 별표 4에 따른다.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남양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시 재무회계규칙”을 “「남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남양주시재무회계규칙”을 “「남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남양주시 남양주 유기농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각각 “「남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남양주시 유용미생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남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남양주시 상수도공기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남양주시 재무회계규칙”을 “「남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남양주시 하수도공기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남양주시재무회계규칙”을 “「남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남양주시 고시 제2020-372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금곡지역주택조합)

1. 우리시 금곡동 404-20번지 일원(금곡역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 9. 24.

남양주시장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서]

- 가. 사 업 명 : 금곡역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금곡역지역주택조합 부영길[남양주시 금곡로 16 2층(금곡동)]
 다. 사업위치 : 남양주시 금곡동 404-20번지 외 35필지
 라. 사업개요

| 구 분 | | 사 업 내 용 | | |
|-----------------------|--------------------------|------------------------------|-----------------------|-------|
| 대지면적 | | 8,108.0000m ² | | |
| 건축면적 | | 3,115.1618 m ² | 건 폐 율 38.42 % | |
| 연 면 적 | | 54,746.9789 m ² | | |
| 용적률산정연면적 | | 34,589.2965 m ² | 용 적 률 426.61 % | |
| 공동주택 | 동수 및 층수 | 아파트 6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지하4층~지상21층 | | |
| | 세 대 수 (주택유형) | 406세대 (지역주택조합 및 일반분양) | 30.6774m ² | 14세대 |
| | | | 30.8840m ² | 38세대 |
| | | | 44.7745m ² | 94세대 |
| | | | 59.8813m ² | 13세대 |
| | | | 59.9636m ² | 140세대 |
| | | | 59.9636m ² | 5세대 |
| | | | 59.8813m ² | 1세대 |
| | | | 65.2878m ² | 32세대 |
| | | | 75.8427m ² | 19세대 |
| | | | 80.5509m ² | 30세대 |
| | | | 80.5509m ² | 2세대 |
| | | | 84.7684m ² | 15세대 |
| | | | 84.9324m ² | 1세대 |
| 84.4891m ² | 1세대 | | | |
| 84.9807m ² | 1세대 | | | |
| 사업기간 | 2020.11.01. ~ 2023.6.30. | | | |
| 사업비 | 135,471,062천원 | | | |

- 마.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일괄)처리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바. 관련 도서 및 도면 : 게재 생략
 사.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20일간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남양주시 고시 제2020-374호

남양주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고시

1. 경기도 고시 제2008-153호(2008.6.2)로 재정비촉진지구 결정고시 되고, 경기도 고시 제2011-132호(2011.5.23)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1-157호(2011.6.30)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2-136호(2012.6.21)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2-195호(2012.9.13)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2-271호(2012.12.20)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3-16호(2013.1.10)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3-306호(2013.12.5)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4-351호(2014.12.1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5-51호(2015.2.23)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5-255호(2015.10.8)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6-115호(2016.5.12.)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6-190호(2016.7.28.)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6-263호(2016.10.27.)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7-42호(2017.2.9)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8-141호(2018.3.22)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8-185호(2018.4.19.)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20-14호(2020.1.9.)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20-197호(2020.5.28.)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20-353호(2020.9.3.)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변경 결정고시된 남양주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남양주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열람 장소 : 관계도서(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재생과(☎031-590-8753)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2020. 9. 24.

남양주시장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 유형 · 위치 · 면적 및 지정목적 (변경)

| 지 구 명 | 유형 | 위 치 | 면 적(m ²) | | | 지정목적 |
|-----------------------------|----------|-------------------|----------------------|-------|---------|--|
| | | | 기정 | 증감 | 변경 | |
| 남양주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 구 | 중심 지형 | 남양주시 다산동 일원 | 326,331 | 감)226 | 326,105 | 기성시가지내 노후.불량 밀집주거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기 능 재정비를 포함한 복합적 개발 을 통해 다산동 일대의 동일 생활 권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발 |

※1-1구역 지적현황(분할) 측량결과 반영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 (변경없음)

- 기준연도 : 2008년
- 목표연도 : 2025년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

1) 계획지표 설정 (변경)

| 구 분 | | 기정 | 증감 | 변경 | 비 고 |
|---------------|-------------------|-----------------------|---------------------|-----------------------|--|
| 인구 및 가구 | 인구 | 14,775명 | 감) 55 | 14,720명 | .존치지역 내 인구 및 세대수 포함 |
| | 세대수 | 5,679세대 | 감) 21 | 5,658세대 | .도시기본계획반영 - 2.6인/세대 |
| 도로율 | | 22.4% | - | 22.4% | .도시구조 변화에 따른 체계적이고 효율적 인 도로 계획 |
| 주차장(개소) | | 2개소 | - | 2개소 | .도농역 주변 개발에 따른 교통혼잡 방지를 위한 주차장 계획 |
| 공원 · 녹지 | 공원 | 20,776m ² | 감) 38m ² | 20,738m ² | .총 9개소 - 근린공원 1, 소공원 7, 문화공원1 |
| | 녹지 | 4,258m ² | - | 4,258m ² | .총 2개소 - 완충녹지 1, 연결녹지 1 |
| | 세대당 공원녹지 면적 | 4.4m ² /세대 | - | 4.4m ² /세대 | - |
| 학교 | | 1개소 | - | 1개소 | .초등학교 1개소(미금초) |
| 복합환승센터 | | 1개소 | - | 1개소 | .전철, 버스, 택시, 자전거, 도보 등 대중교 통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환승센터 설치 |
| 문화·복지시설 | | 1개소 | - | 1개소 | .문화공원 내 커뮤니티 센터 설치 1개소 |

※1-1구역 변경사항 반영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 구 분 | 면 적 (m ²) | | | 구성비 (%) | 비 고 | |
|----------|-----------------------|---------|---------|---------|------|---|
| | 기정 | 증감 | 변경 | | | |
| 총 계 | 326,331 | 감) 226 | 326,105 | 100.0 | | |
| 택지 | 소계 | 186,455 | 감) 190 | 186,265 | 57.1 | |
| | 주거 | 108,543 | 감) 190 | 108,353 | 33.3 | 1-1구역 지적현황(분할)측량결과 반영 |
| | 복합용지 | 29,475 | - | 29,475 | 9.0 | |
| | 상업 | 28,421 | - | 28,421 | 8.7 | |
| | 근생용지 | 1,589 | - | 1,589 | 0.5 | |
| | 종교용지 | 439 | - | 439 | 0.1 | |
| | 공업용지 | 17,988 | - | 17,988 | 5.5 | |
| 기반 시설 | 소계 | 139,876 | 감) 36 | 139,840 | 42.9 | |
| | 도로 | 73,082 | 증) 2 | 73,084 | 22.4 | 1-1구역 내 소공원② 일부를 도로로 변경 및 지적현황(분할)측량결과 반영 |
| | 철도 | 27,271 | - | 27,271 | 8.4 | |
| | 공원 | 20,776 | 감) 38 | 20,738 | 6.4 | 1-1구역 내 소공원② 일부를 도로로 변경 및 지적현황(분할)측량결과 반영 |
| | 녹지 | 4,258 | - | 4,258 | 1.3 | |
| | 학교 | 14,489 | - | 14,489 | 4.4 | |
| | 주차장 | (9,107) | - | (9,107) | - | 공원, 주차장 중복결정 |

※ 1-1구역 변경사항 반영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지적현황(분할) 측량결과 반영

※ 존치관리구역이 포함된 수치임

2) 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 (변경)

| 구 분 | 주택수(세대) | | | 구성비 (%) | 인구수(인) | | | 구성비 (%) | 비 고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 총 계 | 5,679 | 감) 21 | 5,658 | 100.0 | 14,775 | 감) 55 | 14,720 | 100.0 | | |
| 촉진 구역 | 소계 | 2,215 | 감) 21 | 2,194 | 38.8 | 5,759 | 감) 55 | 5,704 | 38.7 | |
| | 40m ² 이하 | 263 | 감) 8 | 255 | 4.5 | 684 | 감) 21 | 663 | 4.5 | |
| | 40~60m ² | 1,079 | 감) 63 | 1,016 | 18.0 | 2,805 | 감) 164 | 2,641 | 17.9 | |
| | 60~85m ² | 826 | 증) 50 | 876 | 15.5 | 2,148 | 증) 130 | 2,278 | 15.5 | |
| | 85m ² 초과 | 47 | - | 47 | 0.8 | 122 | - | 122 | 0.8 | |
| 존치관리구역 소계 | 3,464 | - | 3,464 | 61.2 | 9,016 | - | 9,016 | 61.3 | | |

※ 세대당 인구수 : 2.6인/세대 (도시기본계획 2020년 지표)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3) 임대주택 건설 등 거주 대책 (변경)

| 구 분 | | | 현황 세대수 | 세입 세대 | 토지등 소유자 | 계획 세대 수 | 분 양 (m ²) | | | | | 임 대 (m ²) | | | | |
|-------|----|-----|-----------|----------|------------|---------------|-----------------------|----------|-----------|-----------|----------|-----------------------|----------|-----------|-----------|----------|
| | | | | | | | 소계 | 40 이하 | 40~ 60 | 60~ 85 | 85 초과 | 소계 | 40 이하 | 40~ 60 | 60~ 85 | 85 초과 |
| 총계 | 기정 | 세대수 | 1,054 | 803 | 727 | 2,215 | 1,995 | 69 | 1,053 | 826 | 47 | 220 | 194 | 26 | - | - |
| | | 비율 | - | - | - | 100.0 | 90.0 | 3.1 | 47.5 | 37.3 | 2.1 | 10.0 | 8.8 | 1.2 | - | - |
| | 변경 | 세대수 | 1,054 | 803 | 727 | 2,194 | 1,976 | 63 | 990 | 876 | 47 | 218 | 192 | 26 | - | - |
| | | 비율 | - | - | - | 100.0 | 90.0 | 2.9 | 45.1 | 39.9 | 2.1 | 10.0 | 8.8 | 1.2 | - | - |
| 1-1구역 | 기정 | | 127 | 98 | 151 | 421 | 399 | 6 | 361 | 32 | - | 22 | 22 | - | - | - |
| | 변경 | | | | | 400 | 380 | - | 298 | 82 | - | 20 | 20 | - | - | - |
| 1-3구역 | | | 278 | 223 | 137 | 449 | 412 | 31 | 281 | 100 | - | 37 | 37 | - | - | - |
| 2구역 | | | 27 | 15 | 54 | 194 | 194 | | 163 | 31 | - | - | - | - | - | - |
| 6-1구역 | | | 9 | 9 | 6 | - | - | - | - | - | - | - | - | - | - | - |
| 6-2구역 | | | 612 | 457 | 366 | 1,151 | 990 | 32 | 248 | 663 | 47 | 161 | 135 | 26 | - | - |
| 7구역 | | | 1 | 1 | 13 | | - | - | - | - | - | - | - | - | - | - |

4) 교육시설 · 문화시설 ·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 구 분 | | 면 적(m ²) | | | 구성비 (%) | 비 고 |
|------------------|-------|----------------------|--------|---------|------------|---|
| | | 기정 | 증감 | 변경 | | |
| 촉진지구면적 | | 326,331 | 감) 226 | 326,105 | 100.0 | |
| 기 반 시 설 | 소 계 | 139,876 | 감) 36 | 139,840 | 42.9 | |
| | 도 로 | 73,082 | 증) 2 | 73,084 | 22.4 | |
| | 철 도 | 27,271 | - | 27,271 | 8.4 | |
| | 공 원 | 20,776 | 감) 38 | 20,738 | 6.4 | 1-1구역 내 소공원② 일부를 도로로 변경 및 지적현황(분할)측량결과 반영 |
| | 녹 지 | 4,258 | - | 4,258 | 1.3 | |
| | 학 교 | 14,489 | - | 14,489 | 4.4 | |
| | 주 차 장 | (9,107) | - | (9,107) | - | 공원, 주차장 중복결정 |

5) 공원 · 녹지 및 환경보전 계획 (변경)

| 구분 | 시설명 | 개 수 | | | 면 적(m ²) | | | 비고 |
|------------------|------|-----|----|----|----------------------|-------|--------|--|
| | | 기정 | 증감 | 변경 | 기정 | 증감 | 변경 | |
| 공 원 녹 지 | 계 | 11 | - | 11 | 25,034 | 감) 38 | 24,996 | |
| | 근린공원 | 1 | - | 1 | 1,263 | - | 1,263 | |
| | 소공원 | 7 | - | 7 | 15,024 | 감) 38 | 14,986 | 1-1구역 내 소공원② 일부를 도로로 변경 및 지적현황(분할)측량결과 반영 |
| | 문화공원 | 1 | - | 1 | 4,489 | - | 4,489 | |
| | 완충녹지 | 1 | - | 1 | 3,099 | - | 3,099 | |
| | 연결녹지 | 1 | - | 1 | 1,159 | - | 1,159 | |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 6) 교통계획 (변경없음)
- 7) 경관계획 (변경없음)
- 8) 광고물 관리계획 (변경없음)
- 9)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변경)
 - 가) 촉진구역 총괄 (변경)

| 구분 | 위치 | | 면적(m ²) | | | 비율 (%) | 사업방식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 총계 | | | 326,331 | 감)226 | 326,105 | 100.0 | | |
| 촉진구역 | 소 계 (6개 구역) | | 159,549 | 감)226 | 159,323 | 48.8 | | |
| | 1구역 | 1-1구역 | 남양주시 다산동 4312-4 일원 | 16,035 | 감)226 | 15,809 | 4.8 | 재개발사업 |
| | | 1-3구역 | 남양주시 다산동 4286-6 일원 | 20,738 | - | 20,738 | 6.4 | 재개발사업 |
| | 2구역 | | 남양주시 다산동 4133 일원 | 6,249 | - | 6,249 | 1.9 | 재개발사업 (舊도시환경정비사업) |
| | 6구역 | 6-1구역 | 남양주시 다산동 4053-1 일원 | 22,116 | - | 22,116 | 6.8 | 재개발사업 (舊도시환경정비사업) |
| | | 6-2구역 | 남양주시 다산동 617-64 일원 | 64,917 | - | 64,917 | 20.0 | 재개발사업 (舊도시환경정비사업) |
| | 7구역 | | 남양주시 다산동 4001-19 일원 | 29,494 | - | 29,494 | 9.0 |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소 계 (8개 구역) | | | 166,782 | - | 166,782 | 51.1 | |
| 존치관리구역 | 존치4 | | 남양주시 다산동 4336-27 일원 | 1,589 | - | 1,589 | 0.5 | |
| | 존치5 | | 남양주시 다산동 4065 일원 | 2,637 | - | 2,637 | 0.8 | 존치시설 |
| | 존치6 | | 남양주시 다산동 617-71 일원 | 1,595 | - | 1,595 | 0.5 | 가운연립 |
| | 존치7 | | 남양주시 다산동 4285-2 | 355 | - | 355 | 0.1 | 철도시설 |
| | 존치8 | | 남양주시 다산동 4306-30 일원 | 25,966 | - | 25,966 | 8.0 | (1-2구역) |
| | 존치9 | | 남양주시 다산동 4298-1 일원 | 65,354 | - | 65,354 | 20.0 | (3구역) |
| | 존치10 | | 남양주시 다산동 4039-3 일원 | 66,676 | - | 66,676 | 20.4 | (5구역) |
| | 존치11 | | 남양주시 다산동 4056-6 일원 | 2,610 | - | 2,610 | 0.8 | 철도시설 |

※1-1구역 지적현황(분할) 측량결과 반영

나) 존치관리구역 (변경없음)

다) 존치시설구역 (변경없음)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변경) 계획

| 구 분 | | 면 적(m ²) | | | 구성비(%) | 비 고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합 계 | | 326,331 | 감) 226 | 326,105 | 100.0 | |
| 주거 지역 | 소 계 | 235,454 | 감) 226 | 235,228 | 72.1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23,474 | - | 123,474 | 37.9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40,363 | 감) 226 | 40,137 | 12.3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95 | - | 95 | 0.1 | |
| | 준주거지역 | 71,522 | - | 71,522 | 21.9 | |
| 상업 지역 | 소 계 | 38,235 | - | 38,235 | 11.7 | |
| | 일반상업지역 | 38,235 | - | 38,235 | 11.7 | |
| 공업 지역 | 소 계 | 24,315 | - | 24,315 | 7.5 | |
| | 준공업지역 | 24,315 | - | 24,315 | 7.5 | |
| 녹지 지역 | 소 계 | 28,327 | - | 28,327 | 8.7 | |
| | 자연녹지지역 | 28,327 | - | 28,327 | 8.7 | |

※ 1-1구역 지적현황(분할) 측량결과 반영

※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정비촉진계획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권자(시장)가 별도 결정·고시함

가) 1-1구역(재개발사업) (변경)

| 구 분 | 명 칭 | 면적(m ²) | | | 구성비(%) | 비 고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합계 | | 16,035 | 감) 226 | 15,809 | 100.0 | - |
| 주거지역 | 소계 | 16,035 | 감) 226 | 15,809 | 100.0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6,035 | 감) 226 | 15,809 | 100.0 | - |

※ 1-1구역 지적현황(분할) 측량결과에 따른 구역면적 감소

나) 1-3구역(재개발사업) (변경없음)

다) 2구역(재개발사업) (변경없음)

라) 6-1구역(재개발사업) (변경없음)

마) 6-2구역(재개발사업) (변경없음)

바) 7구역(도시계획시설사업) (변경없음)

11)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구 계획 (변경없음)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12)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변경)

가) 건폐율 및 용적률 계획 (변경)

| 구분 | 구역명 | | | 구역면적 (㎡) | 건폐율 (%) | 기준용적률 (%) | 계획용적률 (%) | 비 고 |
|----------|-----|-------|--------|-------------|------------|--------------|------------------|---------------|
| 기정 변경 | 1구역 | 1-1구역 | 주거 | 16,035 | 60 | 210.0 | 274.9 | 공동주택 |
| | | 변경 | | 15,809 | 60 | 210.0 | 280.0 | |
| 기정 | 2구역 | 1-3구역 | 주거 | 20,738 | 60 | 210.0 | 280.0 | 공동주택 |
| 기정 | | | 준주거 | 6,249 | 70 | 350.0 | 500.0 | 주상복합 |
| 기정 | 6구역 | 6-1구역 | 상업 | 22,116 | 80 | 400.0 | 600.0 (750.0) | 상업 (호텔계획시) |
| 기정 | | 6-2구역 | 준주거 | 64,917 | 70 | 350.0 | 500.0 | 주상복합 |
| | | | 상업 | | 80 | 400.0 | 515.0 (665.0) | 상업 (호텔계획시) |
| 기정 | 7구역 | 준주거 | 29,494 | 70 | 350.0 | 450.0 | 환승센터 + 환승지원시설 | |

※ 1-1구역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지적현황(분할)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용적률계획 변경

※ 호텔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 또는 가족호텔로서, 계획용적률 150% 범위내에서, 최소객실수 80실 이상, 용적률 100% 이상 확보하여야 함

※ 건폐율, 용적률은 “이하” 로 적용함.

※ 사업시행인가 시 추가용적률 각 항목에 대하여 사업계획 반영 여부 및 이행 수준에 따라 계획용적률에 포함된 추가 용적률이 미부여 또는 삭감될 수 있음

나) 높이계획 (변경없음)

다) 기타건축계획 사항 및 지침 (변경없음)

○ 남양주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제2장 12절 건축계획)에 명시

라)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한 경미한 변경 (변경없음)

13)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변경)

가) 촉진구역 기반시설부지 분담 (변경)

| 구역명 | | | 구역면적 (㎡) | 계획기반 시설(㎡) ① | 현황 국공유지(㎡) ② | 유상매입 시설(㎡)③ | 존치기반 시설(㎡) | 순부담면적 ①-(②-③) | 순부담률 (%) |
|-----|-------|--------|-------------|-----------------|--------------------|----------------|---------------|------------------|-------------|
| 1구역 | 1-1구역 | 기정 | 16,035 | 3,361 | 1,354 | - | 917 | 2,007 | 13.28 |
| | | 변경 | 15,809 | 3,325 | 1,128 | - | 920 | 2,197 | 14.76 |
| | 1-3구역 | 20,738 | 6,099 | 2,631 | 1,028 | 1,014 | 4,496 | 22.80 | |
| 2구역 | | | 6,249 | 2,494 | 1,852 | 422 | 1,163 | 1,064 | 20.92 |
| 6구역 | 6-1구역 | 22,116 | 12,703 | 10,169 | 904 | 8,564 | 3,438 | 25.37 | |
| | 6-2구역 | 64,917 | 28,341 | 20,691 | 4,983 | 13,437 | 12,633 | 24.54 | |
| 7구역 | | | 29,494 | 29,494 | - | - | - | - | 21.19 |

※ 1-1구역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지적현황(분할)측량결과 반영

※ 기반시설 부담면적 중 건축면적 및 공공보행데크 면적은 제외

※ 계획기반시설 면적은 구역외 사업자 부담면적을 제외한 면적임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나) 촉진구역 기반시설부지 분담주체 (변경없음)

14) 단계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5) 기타계획(방재계획, 정보화계획, 에너지순환계획,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 특성화계획)
(변경없음)

16)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변경)

가) 1-1구역(재개발사업) (변경)

(1) 재정비촉진구역 지정(변경)조서

| 구분 | 촉진사업 명 칭 | 위 치 | 면적(m ²) | | | 비고 |
|----|----------|--------------------|---------------------|--------|--------|----|
| | | | 기정 | 증감 | 변경 | |
| 변경 | 1-1구역 | 남양주시 다산동 4312-4 일원 | 16,035 | 감) 226 | 15,809 | |

※ 지적현황(분할)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구역면적 감소

(2) 정비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 구 분 | 명 칭 | 면 적(m ²) | | | 구성비 (%) | 비고 |
|---------------------|-------|----------------------|--------|--------|---------|------|
| | | 기정 | 증감 | 변경 | | |
| 합 계 | | 16,035 | 감) 226 | 15,809 | 100.0 | |
| 정비 기반 시설 등 | 소 계 | 3,361 | 감) 36 | 3,325 | 21.0 | |
| | 도 로 | 1,455 | 증) 2 | 1,457 | 9.2 | |
| | 공 원 | 1,906 | 감) 38 | 1,868 | 11.8 | |
| 택지 (획지) | 소 계 | 12,674 | 감) 190 | 12,484 | 79.0 | |
| | 1-1-a | 12,674 | 감) 190 | 12,484 | 79.0 | 공동주택 |

○ 변경사유 : 지난 1-1구역 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남양주시 고시 제2020-197호,2020.05.28.)를 위한
관련부서(교통정책과) 협의의견(교차로부 선형개량)에 대한 조치계획 반영 및 지적현황(분할)측량
결과 반영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구 분 | 명 칭 | 면 적(m ²) | | | 구성비(%) | 비 고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합 계 | | 16,035 | 감) 226 | 15,809 | 100.0 | - |
| 주거지역 | 소 계 | 16,035 | 감) 226 | 15,809 | 100.0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6,035 | 감) 226 | 15,809 | 100.0 | - |

※ 지적현황(분할)측량결과 구역면적 감소에 따른 용도지역 면적 축소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 도시계획시설사항은 재정비촉진계획 범위내에서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권자가 별도 결정·고시한다.

(1) 도로 (변경)

▶ 도로 결정(변경)조서

| 구 분 | 규 모 | | | | 기능 | 연장 (m) | 위 치 | | 사용 형태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기점 | 종점 | | | |
| 기정 | 중로 | 3 | 25 | 12 | 집산 도로 | 272 (108) | 다산동 4323-4 | 다산동 4336-23 | 일반 도로 | 남양주30호 (‘00.5.6) | |
| 변경 | 중로 | 3 | 25 | 12 | 집산 도로 | 272 (108) | 다산동 4323-4 | 다산동 4336-23 | 일반 도로 | 남양주30호 (‘00.5.6) | 선형 변경 |
| 기정 | 소로 | 2 | A | 6~9 | 국지 도로 | 54 | 다산동 4336-45 | 중로3-25 | 일반 도로 | - | |

※ ()안의 연장은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내 포함된 연장임

▶ 변경사유서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비고 |
|------------|------------|---|---|----|
| 중로3-25 | 중로3-25 | ○ 선형변경 - 소공원2 예각부분을 각각전제하여 도로에 편입 | ○ 기존 협의의견 (소공원② 예각부분 에 대한 '교차로부 선형개량'(교통정책과)) 반영 | |

(2) 공원 (변경)

▶ 공원 결정(변경)조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m ²)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변경 | 1 | 공원 | 소공원 | 다산동 4323-5 일원 | 675 | 감) 5 | 670 | - | |
| 변경 | 2 | 공원 | 소공원 | 다산동 4336-26 일원 | 1,231 | 감) 33 | 1,198 | - | |

※ 행정구역 변경(도농동→다산동)에 따른 위치 지번 정정

▶ 변경사유서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1 | 소공원 | ○ 면적변경 - 675m ² → 670m ² (감 5m ²) | ○ 지적현황(분할)측량결과 반영 |
| 2 | 소공원 | ○ 면적 및 선형변경 - 1,231m ² → 1,198m ² (감 33m ²) | ○ 기존 협의의견 (소공원② 예각부분에 대한 '교차로부 선형개량'(교통정책과)) 반영하여 일 부 도로 편입 및 측량결과 반영 |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변경)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변경)

| 구 분 | |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 | | | 비 고 |
|-------|-----|--------|-------------|--------|--------------------|-----------------|-----|-----|--------|-------|-----|
| 결정 구분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 계 | 존 치 | 개 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 기정 | 1-1 | 16,035 | - | - | 남양주시 다산동 4312-4 일원 | 16 | - | - | 16 | - | |
| 변경 | 구역 | 15,809 | | | | | | | | | |

■ 건축시설계획 (변경)

| 결정 구분 | 구분 |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 위 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 | |
| 기정 | 1-1 | 16,035 | 1-1-a | 12,674 | 남양주시 다산동 4312-4 일원 | 공동주택 | 60 | 274.9 |
| 변경 | 구역 | 15,809 | | 12,484 | | | | 280.0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기정 | .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합계</th> <th colspan="5">분양 (㎡)</th> <th colspan="5">임대 (㎡)</th> </tr> <tr> <th>소계</th> <th>40이하</th> <th>60이하</th> <th>85이하</th> <th>85초과</th> <th>소계</th> <th>40이하</th> <th>60이하</th> <th>85이하</th> <th>85초과</th> </tr> </thead> <tbody> <tr> <td>세대수</td> <td>421</td> <td>399</td> <td>6</td> <td>361</td> <td>32</td> <td>-</td> <td>22</td> <td>22</td> <td>-</td> <td>-</td> <td>-</td> </tr> <tr> <td>비율 (%)</td> <td>100.0</td> <td>94.8</td> <td>1.4</td> <td>85.8</td> <td>7.6</td> <td>-</td> <td>5.2</td> <td>5.2</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 | | | | | | | | | | 구분 | 합계 | 분양 (㎡) | | | | | 임대 (㎡) | | | | | 소계 | 40이하 | 60이하 | 85이하 | 85초과 | 소계 | 40이하 | 60이하 | 85이하 | 85초과 | 세대수 | 421 | 399 | 6 | 361 | 32 | - | 22 | 22 | - | - | - | 비율 (%) | 100.0 | 94.8 | 1.4 | 85.8 | 7.6 | - | 5.2 | 5.2 | - | - | - |
| | 구분 | 합계 | 분양 (㎡) | | | | | 임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40이하 | 60이하 | 85이하 | 85초과 | 소계 | 40이하 | 60이하 | 85이하 | 85초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대수 | 421 | 399 | 6 | 361 | 32 | - | 22 | 2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율 (%) | 100.0 | 94.8 | 1.4 | 85.8 | 7.6 | - | 5.2 | 5.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임대주택 건립비율 - 주거 세대수의 5%이상 임대주택 확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경 | .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합계</th> <th colspan="5">분양 (㎡)</th> <th colspan="5">임대 (㎡)</th> </tr> <tr> <th>소계</th> <th>40이하</th> <th>60이하</th> <th>85이하</th> <th>85초과</th> <th>소계</th> <th>40이하</th> <th>60이하</th> <th>85이하</th> <th>85초과</th> </tr> </thead> <tbody> <tr> <td>세대수</td> <td>400</td> <td>380</td> <td>-</td> <td>298</td> <td>82</td> <td>-</td> <td>20</td> <td>20</td> <td>-</td> <td>-</td> <td>-</td> </tr> <tr> <td>비율 (%)</td> <td>100.0</td> <td>95.0</td> <td>-</td> <td>74.5</td> <td>20.5</td> <td>-</td> <td>5.0</td> <td>5.0</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 | | | | | | | | | | 구분 | 합계 | 분양 (㎡) | | | | | 임대 (㎡) | | | | | 소계 | 40이하 | 60이하 | 85이하 | 85초과 | 소계 | 40이하 | 60이하 | 85이하 | 85초과 | 세대수 | 400 | 380 | - | 298 | 82 | - | 20 | 20 | - | - | - | 비율 (%) | 100.0 | 95.0 | - | 74.5 | 20.5 | - | 5.0 | 5.0 | - | - | - |
| 구분 | 합계 | 분양 (㎡) | | | | | 임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40이하 | 60이하 | 85이하 | 85초과 | 소계 | 40이하 | 60이하 | 85이하 | 85초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대수 | 400 | 380 | - | 298 | 82 | - | 20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율 (%) | 100.0 | 95.0 | - | 74.5 | 20.5 | - | 5.0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임대주택 건립비율 - 주거 세대수의 5%이상 임대주택 확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법규에 의함 . 지금도농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 구분 | 시행방법 | 시행 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으로 증감예상 세대수 | 홍수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고 |
|----|--------|------------|---------------------------|-----------------|-------------------|--------------------------|
| 기정 | 재개발 사업 | 2단계 (201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시행자 | 증) 294 | - | 시행시기는 주변구역 추진현황에 따라 조정가능 |
| 변경 | | | | 증) 273 | - | |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변경없음)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

| 가구 | 면적 (m ²) | 획지 구분 | | | | | 비고 |
|-----|-------------------------|-------|--------------------|----------------------|--------|--------|------|
| | | 명칭 | 위치 | 면 적(m ²) |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1-1 | 15,809 | a | 남양주시 다산동 4312-4 일원 | 12,674 | 감) 190 | 12,484 | 공동주택 |

■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

| 건립 위치 | 부지면적 (m ²) | 동수 | 지상연면적 (m ²) | | | 세대규모 | 세대수 | | | 비고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1-1구역 | - | - | - | - | - | 합 계 | 22 | 감)2 | 20 | |
| | | | | | | 40m ² 이하 | 22 | 감)2 | 20 | |
| | | | | | | 60m ² 이하 | - | - | - | |
| | | | | | | 85m ² 이하 | - | - | - | |
| | | | | | | 85m ² 초과 | - | - | - | |

※ 임대주택을 위한 별도의 획지를 구획하지 않고 현재의 구역에 계획함

- 나) 1-3구역(재개발사업) (변경없음)
- 다) 2구역(재개발사업) (변경없음)
- 라) 6-1구역(재개발사업) (변경없음)
- 마) 6-2구역(재개발사업) (변경없음)
- 바) 7구역(도시계획시설사업) (변경없음)

5.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관련사항은 「남양주 지금·도농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에 따름
6.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남양주시 고시 제2020-375호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묵현5지구 근린공원)

1. 우리시 화도읍 묵현리 24-12번지 일원 남양주고시 제2012-249호(2012.11.15.)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된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규정에 따라 붙임의 결정조건을 부여하여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하며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공원조성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 9. 24.

남양주시장

가. 도시관리계획 시설 현황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m ²)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1 | 공원 | 근린공원 | 화도읍 묵현리 24-12 | 15,811.5 | 남양주 고시 제2012-249호 (2012.11.15.) | - |

나.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사유서

| 시 설 명 | 변 경 사 유 |
|-------|--|
| 근린공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정측량에 따른 공원면적 정정○ 공원 내 동선 변경 및 삭제에 따른 광장과 휴게공간의 일부 조정 |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다.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 구 분 | | 부지면적 (㎡) | 구성비 (%) | 건축면적(㎡) | | 비 고 | | |
|------|---------|-------------|------------|---------|------|------|--------------|--------------|
| | | | | 바닥면적 | 연면적 | | | |
| 총 계 | | 기정 | 15,866.0 | 100.0 | 27.2 | 27.2 | | |
| | | 변경 | 15,811.5 | 100.0 | 25.0 | 25.0 | | |
| 공원시설 | 시설면적 | 기정 | 5,997.1 | 37.8 | 27.2 | 27.2 | | |
| | | 변경 | 5,952.2 | 37.7 | 25.0 | 25.0 | | |
| | 도로 및 광장 | 기정 | 3,205.5 | 20.3 | - | - | | |
| | | 변경 | 3,155.8 | 20.0 | - | - | 동선변경 | |
| | 휴 양 시 설 | 기정 | 498.2 | 3.1 | - | - | | |
| | | 변경 | 500.8 | 3.2 | - | - | 면적변경 | |
| | 유 희 시 설 | 기정 | 508.2 | 3.2 | - | - | | |
| | 운 동 시 설 | 기정 | 1,166.8 | 7.3 | - | - | | |
| | | 변경 | 1,173.1 | 7.4 | - | - | 면적변경 | |
| | 편 익 시 설 | 기정 | 618.4 | 3.9 | 27.2 | 27.2 | | |
| | | 변경 | 614.3 | 3.9 | 25.0 | 25.0 | 건축허가 면적변경 | |
| | 관 리 시 설 | 기정 | - | - | - | - | | |
| | 녹지 및 기타 | | 기정 | 9,868.9 | 62.2 | - | - | |
| | | | 변경 | 9,859.3 | 62.3 | | | 확정측량 면적변경 |

라. 세부시설 결정 조서

| 구 분 | 도면 번호 | 시설명 | 부지면적 (㎡) | 건축면적 (㎡) | 건축연면 적 (㎡) | 공작물 | 비고 |
|----------|----------|----------|-------------|-------------|------------------|------|-------|
| 총 계 | 기 정 | | 15,866.0 | 27.2 | 27.2 | 85개소 | |
| | 변 경 | | 15,811.5 | 25.0 | 25.0 | 89개소 | |
| 시설면적 | 기 정 | | 5,997.1 | 27.2 | 27.2 | 85개소 | 37.8% |
| | 변 경 | | 5,952.2 | 25.0 | 25.0 | 89개소 | 37.7% |
| 기반 시설 | 기정 | 소 계 | 3,205.5 | - | - | - | |
| | 변경 | | 3,155.8 | - | - | - | |
| | 기정 | 도로 | 1,180.9 | - | - | - | |
| | 변경 | | 1,212.5 | - | - | - | |
| | 기정 | 가 광장 | 2,024.6 | - | - | - | |
| | 변경 | | 1,943.3 | - | - | - | |
| | 기정 | 가-1 중앙광장 | 1,624.6 | - | - | - | |
| | 변경 | | 1,542.7 | - | - | - | |
| | 기정 | 가-2 소광장A | 299.4 | - | - | - | |
| | 기정 | 가-3 소광장B | 30.7 | - | - | - | |
| | 기정 | 가-4 진입광장 | 69.9 | - | - | - | |
| | 변경 | | 70.5 | - | - | - | |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 구 분 | 도면 번호 | 시설명 | 부지면적 (㎡) | 건축면적 (㎡) | 건축연면 적 (㎡) | 공작물 | 비고 | |
|----------|----------|-------|-------------|-------------|------------------|------|--------|----------------|
| 조경 시설 | 기정 | 소 계 | - | - | - | 2개소 | 239.5m | |
| | 변경 | | - | - | - | 4개소 | 616.0m | |
| | 기정 | ① | 목교 | - | - | 2개소 | | |
| | 기정 | ② | 산벽 | | | | 37.5m | |
| | 기정 | ③ | 조경석쌓기 | - | - | - | 202.0m | |
| | 변경 | | | | | | 578.5m | |
| | 신설 | ② | 장식담장 | | | | 2개소 | |
| 휴양 시설 | 기정 | 소 계 | 498.2 | - | - | 42개소 | | |
| | 변경 | | 500.8 | - | - | 42개소 | | |
| | 기정 | 나-1 | 휴게공간A | 53.9 | - | - | | |
| | 기정 | 나-2 | 휴게공간B | 76.1 | - | - | | |
| | 기정 | 나-3 | 휴게공간C | 87.0 | - | - | | |
| | 변경 | | | 85.8 | - | - | | |
| | 기정 | 나-4 | 휴게공간D | 16.0 | - | - | | |
| | 기정 | 나-5 | 휴게공간E | 83.9 | - | - | | |
| | 변경 | | | 86.6 | - | - | | |
| | 기정 | 나-6 | 휴게공간F | 28.3 | - | - | | |
| | 변경 | | | 26.5 | - | - | | |
| | 기정 | 나-7 | 휴게공간G | 153.0 | - | - | | |
| | 변경 | | | 155.9 | - | - | | |
| | 기정 | ④ | 차양막 | - | - | - | 1개소 | |
| | 기정 | ⑤ | 파고라 | - | - | - | 9개소 | 하부평의자 3개소 씩 |
| | 기정 | ⑥ | 원형파고라 | - | - | - | 1개소 | |
| | 기정 | ⑦ | 등의자 | - | - | - | 2개소 | |
| | 기정 | ⑧ | 평의자 | - | - | - | 27개소 | |
| | 기정 | ⑨ | 앉음벽 | - | - | - | - | 185.0m |
| | 변경 | | | - | - | - | - | 67.0m |
| 기정 | ⑩ | 야외테이블 | | - | - | 2개소 | | |
| 유희 시설 | 기정 | 소 계 | 508.2 | - | - | 6개소 | | |
| | 기정 | 다 | 어린이놀이터 | 508.2 | - | - | | |
| | 기정 | ⑪ | 케이블카 | - | - | - | 1개소 | |
| | 기정 | ⑫ | 모험놀이대 | - | - | - | 1개소 | |
| | 기정 | ⑬ | 그네 | - | - | - | 1개소 | |
| | 기정 | ⑭ | 흔들놀이대 | - | - | - | 3개소 | |
| 운동 시설 | 기정 | 소계 | 1,166.8 | - | - | 5개소 | | |
| | 변경 | | 1,173.1 | - | - | 5개소 | | |
| | 기정 | 라-1 | 다목적구장 | 825.8 | - | - | - | 골대포함1 면 |
| | 변경 | | | 832.1 | - | - | - | 골대포함1 면 |
| | 기정 | 라-2 | 배드민턴장 | 341.0 | - | - | - | 네트포함2 면 |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 구 분 | 도면 번호 | 시설명 | 부지면적 (㎡) | 건축면적 (㎡) | 건축연면 적 (㎡) | 공작물 | 비고 | |
|----------|----------|----------|-------------|-------------|------------------|------|---------------------|------|
| 편의 시설 | 기정 ⑮ | 체력단련시설A | - | - | - | 1개소 | | |
| | 기정 ⑯ | 체력단련시설B | - | - | - | 2개소 | | |
| | 기정 ⑰ | 체력단련시설C | - | - | - | 1개소 | | |
| | 기정 ⑱ | 체력단련시설D | - | - | - | 1개소 | | |
| | 신설 ㉓ | 다목적구장헬스 | - | - | - | - | 66.0m (출입구2개소) | |
| | 기정 | 소 계 | | 618.4 | 27.2 | 27.2 | - | |
| | 변경 | 소 계 | | 614.3 | 25.0 | 25.0 | - | |
| | 기정 | 바 | 주차장 | 503.2 | - | - | - | |
| | 변경 | | | 499.8 | - | - | - | |
| | 기정 | 마 | 화장실부지 | 115.2 | - | - | - | |
| | 변경 | | | 114.5 | - | - | - | |
| | 변경 | ⑲ | 화장실 | - | 27.2 | 27.2 | - | |
| | 변경 | | | - | 25.0 | 25.0 | - | |
| | 관리 시설 | 기정 | 소 계 | | - | - | - | 30개소 |
| 변경 | | 소 계 | | - | - | - | 32개소 | |
| 변경 ㉒ | | 공원등 | | - | - | - | 26개소 공원등 26EA | |
| 변경 ㉓ | | CCTV | | - | - | - | 4개소 CCTV 4EA | |
| 신설 ㉔ | | 안내판 | | - | - | - | 2개소 | |
| 신설 ㉕ | | 메쉬헬스 | | - | - | - | 58.0m(공원 경계) | |
| 신설 ㉖ | | 로프헬스 | | - | - | - | 58.0m(구거 주변) | |
| 신설 ㉗ | | 안전헬스 | | - | - | - | 55.0m(휴게 쉼터) | |
| 녹지 | 기정 | 소 계 | | 9,868.9 | - | - | 62.2% | |
| | 변경 | 소 계 | | 9,859.3 | - | - | 62.3% | |
| | 기정 | 바 | 녹지 | 9,376.5 | - | - | - | |
| | 변경 | 사 | 녹지 | 9,342.6 | - | - | - | |
| | 기정 ㉘ | 기타시설(구거) | | 492.4 | - | - | - | |
| | 변경 ㉙ | 기타시설(구거) | | 516.7 | - | - | - | |

마. 도로 결정 조서

| 등급 | 구분 | 류별 | 기능 | 번호 | 폭원 (m) | 연장 (m) | 면적 (㎡) | 기점 | 종점 | 비고 |
|-----|-----|----|-----|----|-----------|-----------|-----------|---------|-------|--------------|
| 기 정 | 합 계 | | | | | 496.2 | 1,180.9 | | | |
| 변 경 | | | | | | 502.3 | 1,212.5 | | | |
| 소로 | 기정 | 3 | 진입로 | 1 | 6.5 | 34.6 | 223.6 | 국도387호선 | 주차장 | 가각부 1.3㎡ |
| | | | | | 6.5 | 40.7 | 258.4 | 국도387호선 | 주차장 | 가각부 -6.2㎡ |
| 소로 | 기정 | 3 | 진입로 | 2 | 1.5 | 43.2 | 64.8 | 소로3-3 | 진입광장A | - |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 | | | | | | | | | | |
|----|----|---|-----|----|-----|------|-------|--------------|-------|---------------------------|
| 소로 | 기정 | 3 | 연결로 | 3 | 2.0 | 18.5 | 37.0 | 소로3-2 | 소로3-5 | - |
| 소로 | 기정 | 3 | 연결로 | 4 | 2.0 | 21.1 | 42.2 | 소광장B | 휴게공간E | 가각부 0.1m ² |
| | | | | | 2.0 | 21.3 | 42.7 | 소광장B | 휴게공간E | |
| 소로 | 기정 | 3 | 연결로 | 5 | 2.5 | 36.4 | 95.5 | 소로3-6 | 소로3-9 | 가각부 4.5m ² |
| | | | | | 2.5 | 36.4 | 101.0 | 소로3-6 | 소로3-9 | 가각부 10.0m ² |
| 소로 | 기정 | 3 | 연결로 | 6 | 2.0 | 49.8 | 154.9 | 중앙광장 | 소로3-7 | 가각부 55.3m ² |
| | | | | | 2.0 | 58.9 | 155.1 | 중앙광장 | 소로3-7 | 가각부 37.3m ² |
| 소로 | 기정 | 3 | 연결로 | 7 | 2.0 | 76.6 | 153.2 | 중앙광장 | 휴게공간F | |
| 소로 | 기정 | 3 | 연결로 | 8 | 2.0 | 34.6 | 72.5 | 휴게공간C | 소로3-6 | 가각부 3.3m ² |
| | | | | | 2.0 | 34.6 | 77.7 | 휴게공간C | 소로3-6 | 가각부 8.5m ² |
| 소로 | 기정 | 3 | 연결로 | 9 | 2.0 | 34.5 | 69.3 | 휴게공간E | 소광장A | 가각부 0.3m ² |
| | | | | | 2.0 | 34.1 | 68.5 | 휴게공간E | 소광장A | 가각부 0.3m ² |
| 소로 | 기정 | 3 | 산책로 | 10 | 1.5 | 21.8 | 33.1 | 배드민턴장 | 소로3-9 | 가각부 0.4m ² |
| | | | | | 1.5 | 21.9 | 33.1 | 배드민턴장 | 소로3-9 | 가각부 0.3m ² |
| 소로 | 기정 | 3 | 진입로 | 11 | 2.0 | 32.6 | 65.7 | 휴게공간E | 소광장A | 가각부 0.5m ² |
| | | | | | 2.0 | 32.3 | 65.1 | 휴게공간E | 소광장A | 가각부 0.5m ² |
| 소로 | 기정 | 3 | 진입로 | 12 | 2.0 | 7.1 | 14.6 | 소광장A | 휴게공간C | 가각부 0.4m ² |
| 소로 | 기정 | 3 | 진입로 | 13 | 2.0 | 11.5 | 24.4 | 소광장A | 휴게공간C | 가각부 1.4m ² |
| 소로 | 기정 | 3 | 진입로 | 14 | 1.5 | 21.8 | 43.2 | 목현5지구주거 동 | 휴게공간G | 가각부 10.5m ² |
| 소로 | 기정 | 3 | 진입로 | 15 | 2.0 | 14.5 | 29.1 | 휴게공간G | 진입광장A | 가각부 0.1m ² |
| 소로 | 기정 | 3 | 진입로 | 16 | 1.5 | 17.8 | 26.9 | 경관녹지 | 진입광장A | 가각부 0.2m ² |
| | | | | | 1.5 | 9.1 | 13.6 | 중앙광장 | 다목적구장 | 가각부 -0.1m ² |
| 소로 | 기정 | 3 | 진입로 | 17 | 1.5 | 19.8 | 30.9 | LIG APT | 휴게공간E | 가각부 1.2m ² |
| | | | | | 1.5 | 19.8 | 31.0 | LIG APT | 휴게공간E | 가각부 1.3m ² |

바. 관련도면 (별첨, 게재는 생략)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남양주시 고시 제2020-376호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지정 고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및 「남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관내 준대규모점포(하단 참조)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변경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 9. 24.

남양주시장

1. 시행 목적

- 관내 (준)대규모점포는 매월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을 휴업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추석 명절을 맞아 준대규모점포(하단 참조)의 의무휴업일을 변경 지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매장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및 시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한시적 변경 내용

-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 구 분 | 현 행 | 변 경 | 비 고 |
|---------------------------|------------------|-----------------|-------|
| 추석 명절 (10.1. ~ 10. 4.) | 2020. 10. 14.(수) | 2020. 10. 1.(목) | 추석 당일 |

※ 2020년 10월 넷째주 수요일 의무휴업일은 변동없음

○ 준대규모점포 : 노브랜드(남양주호평점, 남양주오남점, 남양주화도점, 남양주화도2점, 남양주별내점, 남양주퇴계원점, 남양주진접점, 남양주도곡점, 남양주평내점, 남양주다산점), 롯데슈퍼(G오남2점, 남양주진접점, 남양주마석점, 남양주호평점, 남양주청학점, 남양주별내점, 남양주도곡점), GS수퍼마켓(별내2점, 다산중앙점, 다산반도유보라점, 다산금강펜테리움점, 다산인스빌점, 남양주별내점)

3. 관련근거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및 「남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4. 시 행 일 : 2020. 9. 22.

- 문의처 : 남양주시 소상공인과(☎031-590-2275)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남양주시 고시 제2020-378호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늘을중앙공원)

1. 우리시 호평동 218-3번지 일원 남양주 고시 제2010-136호(2010.06.29.)로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된 문화공원의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과, 같은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공원조성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 9. 24.

남양주시장

가. 도시관리계획 시설 현황

| 도면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395 | 공원 | 수변공원 | 호평동 218-3번지 | 17,081.0 | 남고 제2010-136호 (2010. 06. 29) | |

나.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사유서

| 시 설 명 | 변 경 사 유 |
|--------|---|
| 늘을중앙공원 | ○ 늘을중앙공원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주차장, 다목적광장 등 변경사항이 있어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다.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구 분 | | 토지이용면적(㎡) | 구성비 (%) | 건축면적(㎡) | | 비 고 |
|----------|----|-----------|---------|---------|----------|----------------------------|
| | | | | 바닥면적 | 연면적 | |
| 합 계 | 기정 | 17,081.00 | 100.0 | | | |
| | 변경 | 17,081.00 | 100.0 | 428.91 | 9,446.74 | |
| 시 설 부 지 | 기정 | 6,832.00 | 40.0 | | | |
| | 변경 | 6,828.09 | 40.0 | | | |
| 도로 및 광장, | 기정 | 5,446.70 | 31.9 | | | 지하1층 5,200㎡ 지하2층 5,200㎡ |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 | | | | | | |
|---------|----|-----------|------|--------|--------|----------------------------------|
| 주차장 | 변경 | 4,905.83 | 28.7 | | | 지하1층 4,418.33㎡ 지하2층 4,583.91㎡ |
| | 기정 | 918.70 | 5.3 | | | |
| 조경시설 | 변경 | 989.74 | 5.8 | | | |
| | 기정 | 221.6 | 1.3 | | | |
| 편익시설 | 변경 | 191.19 | 1.1 | 49.7 | 49.7 | |
| | 기정 | 203.00 | 1.2 | | | |
| 휴양시설 | 변경 | 320.12 | 1.9 | | | |
| | 기정 | 42 | 0.3 | | | |
| 운동시설 | 기정 | 0 | 0.0 | | | |
| | 변경 | 379.21 | 2.2 | 379.21 | 379.21 | |
| 녹지 및 기타 | 기정 | 10,249.00 | 60.0 | | | |
| | 변경 | 10,252.91 | 60.0 | | | |

라.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 시설구분 | 시설명 | | 시설번호 | 부지면적 (㎡) | 건축면적(㎡) | | 비고 |
|--------------|-------|----|------|-----------|---------|----------|----------------------------------|
| | | | | | 바닥면적 | 연면적 | |
| 합계(기정) | 총 계 | | | 17,081.00 | | | 100.0% |
| 합계(변경) | 총 계 | | | 17,081.00 | 428.91 | 9,446.74 | 100.0% |
| 도로 및 광장 (기정) | 소계 | | | 5,446.70 | | | 22.7% |
| | 진입광장1 | 기정 | 마-1 | 264.30 | | | 1.6% |
| | 진입광장2 | 기정 | 마-2 | 118.90 | | | 0.7% |
| | 진입광장3 | 기정 | 마-3 | 52.40 | | | 0.3% |
| | 진입광장4 | 기정 | 마-4 | 90.80 | | | 0.5% |
| | 진입광장5 | 기정 | 마-5 | 122.00 | | | 0.7% |
| | 진입광장6 | 기정 | 마-6 | 39.70 | | | 0.2% |
| | 다목적광장 | 기정 | 마-7 | 1,930.00 | | | 11.3% |
| | 도로 | 기정 | | 2,828.60 | | | 16.6% |
| | 주차장 | 기정 | | - | | | 지하1층 5,200㎡ 지하2층 5,200㎡ |
| 도로 및 광장 (변경) | 소계 | | | 4,905.83 | | | 28.7% |
| | 진입광장1 | 변경 | 마-1 | 297.04 | | | 1.7% |
| | 진입광장2 | 변경 | 마-2 | 49.23 | | | 0.3% |
| | 진입광장3 | 변경 | 마-3 | 36.41 | | | 0.2% |
| | 진입광장4 | 변경 | 마-4 | 386.19 | | | 2.3% |
| | 진입광장5 | 변경 | 마-5 | 38.37 | | | 0.2% |
| | 다목적광장 | 변경 | 마-6 | 1,701.48 | | | 10.0% |
| | 소광장1 | 변경 | 마-7 | 135.49 | | | 0.8% |
| | 소광장2 | 변경 | 마-8 | 40.68 | | | 0.2% |
| | 도로 | 변경 | | 2,220.94 | | | 13.0% |
| | 주차장 | 변경 | | - | | 9,017.83 | 지하1층 4,418.33㎡ 지하2층 4,583.91㎡ |
| 조경시설 (기정) | 소 계 | | | 918.70 | | | 5.3% |
| | 전망데크 | 기정 | 가-1 | 222.90 | | | 1.3% |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 | | | | | | | |
|-----------------|------------|----|-----|-----------|--------|--------|-------|
| | 계류 | 기정 | 가-2 | 236.40 | | | 1.4% |
| | 특화체험시설 | 기정 | 가-3 | 113.00 | | | 0.6% |
| | 바닥분수 | 기정 | 가-4 | 346.40 | | | 2.0% |
| 조경시설 (변경) | 소 계 | | | 989.74 | | | 5.8% |
| | 전망데크 | 변경 | 가-1 | 27.90 | | | 0.2% |
| | 계류 | 변경 | 가-2 | 389.28 | | | 2.3% |
| | 바닥분수 | 변경 | 가-4 | 572.56 | | | 3.3% |
| 편익시설 (기정) | 소계 | | | 221.60 | | | 1.4% |
| | 관리사무소 | 기정 | 라-1 | 36.30 | 36.30 | 36.30 | 0.2% |
| | 화장실 | 기정 | 라-2 | 53.00 | 53.00 | 53.00 | 0.3% |
| | 계단 및 엘리베이터 | 기정 | 라-3 | 35.20 | 35.20 | 35.20 | 0.2% |
| | 계단 및 엘리베이터 | 기정 | 라-4 | 40.30 | 40.30 | 40.30 | 0.2% |
| | 카페테리아 | 기정 | 라-5 | 56.80 | 56.80 | 56.80 | 0.3% |
| 편익시설 (변경) | 소계 | | | 191.19 | 49.7 | 49.7 | 1.1% |
| | 계단1 | 변경 | 라-1 | 141.52 | | | 0.8% |
| | 계단2 | 변경 | 라-2 | 49.67 | 49.7 | 49.7 | 0.3% |
| 휴양시설 (기정) | 소계 | | | 203.00 | | | 1.2% |
| | 광장쉼터 | 기정 | 나-1 | 187.00 | | | 1.1% |
| | 쉼터1 | 기정 | 나-2 | 16.00 | | | 0.1% |
| 휴양시설 (변경) | 소계 | | | 320.12 | | | 1.9% |
| | 광장쉼터1 | 신설 | 나-1 | 176.97 | | | 1.0% |
| | 광장쉼터2 | 신설 | 나-2 | 143.15 | | | 0.9% |
| 운동시설 (기정) | 소계 | | | 42.00 | | | 0.3% |
| | 체력단련장1 | 기정 | 다-1 | 14.00 | | | 0.1% |
| | 체력단련장2 | 기정 | 다-2 | 14.00 | | | 0.1% |
| | 체력단련장3 | 기정 | 다-3 | 14.00 | | | 0.1% |
| 관리시설 (변경) | 소계 | | | 379.21 | 379.21 | 379.21 | 2.2% |
| | 관리사무소 | 변경 | 바-1 | 200.49 | 200.49 | 200.49 | 1.2% |
| | 화장실 | 신설 | 바-2 | 116.76 | 116.76 | 116.76 | 0.6% |
| | 지하환기구 | 신설 | 바-3 | 61.96 | 61.96 | 91.96 | 0.4% |
| 녹지 및 기타 (당초) | 소계 | | | 10,249.00 | | | 60.0% |
| | 녹지 | 기정 | 녹지 | 10,249.00 | | | 60.0% |
| 녹지 및 기타 (변경) | 소계 | | | 10,252.91 | | | 60.0% |
| | 녹지 | 변경 | 녹지 | 10,252.91 | | | 60.0% |

마. 도로 결정(변경) 조서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 구분 | 등급 | 번호 | 폭(m) | 연장(m) | 기능 | 기점 | 종점 |
|-----|----|----|------|--------|-----|-------|-------|
| 소로 | 1 | 1 | 11.0 | 25.4 | 진입로 | 북측도로 | 지하주차장 |
| | 3 | 1 | 4.8 | 62.3 | 연결로 | 진입광장1 | 다목적광장 |
| | 3 | 2 | 2.8 | 152.3 | 연결로 | 다목적광장 | 진입광장2 |
| | 3 | 3 | 3.8 | 163.93 | 연결로 | 동측보도 | 소로3-1 |
| | 3 | 4 | 3.8 | 43.59 | 연결로 | 소로3-3 | 소로3-1 |
| | 3 | 5 | 4.8 | 82.18 | 연결로 | 바닥분수 | 다목적광장 |
| 산책로 | | 1 | 1.8 | 111.6 | 산책로 | 소로3-5 | 소로3-2 |
| | | 2 | 1.8 | 28.78 | 산책로 | 소로3-2 | 바닥분수 |
| | | 3 | 1.8 | 16.65 | 산책로 | 바닥분수 | 바닥분수 |
| | | 4 | 1.3 | 12.76 | 산책로 | 소로3-2 | 산책로2 |
| | | 5 | 1.3 | 13.29 | 산책로 | 산책로2 | 산책로1 |
| | | 6 | 2.0 | 6.99 | 산책로 | 산책로1 | 바닥분수 |
| | | 7 | 2.0 | 7.21 | 산책로 | 바닥분수 | 계류 |
| | | 8 | 1.2 | 24.00 | 산책로 | 산책로5 | 산책로2 |
| | | 9 | 1.2 | 14.20 | 산책로 | 산책로1 | 산책로8 |
| | | 10 | 2.8 | 6.06 | 산책로 | 진입광장3 | 산책로1 |
| | | 11 | 1.7 | 19.80 | 산책로 | 북측보도 | 소로3-2 |
| | | 12 | 1.8 | 42.42 | 산책로 | 진입광장5 | 소광장1 |
| | | 13 | 2.8 | 37.39 | 산책로 | 소광장1 | 진입광장4 |
| | | 14 | 1.8 | 25.67 | 산책로 | 진입광장4 | 소광장1 |
| | | 15 | 1.3 | 25.74 | 산책로 | 산책로12 | 산책로13 |
| | | 16 | 1.3 | 18.11 | 산책로 | 산책로13 | 산책로14 |
| | | 17 | 1.3 | 83.72 | 산책로 | 산책로14 | 다목적광장 |
| | | 18 | 1.8 | 34.85 | 산책로 | 소광장1 | 산책로19 |
| | | 19 | 2.8 | 9.80 | 산책로 | 산책로18 | 소로3-3 |
| | | 20 | 1.2 | 5.33 | 산책로 | 산책로18 | 산책로17 |
| | | 21 | 1.3 | 6.00 | 산책로 | 산책로17 | 다목적광장 |

바. 관련도면 (별첨, 게재는 생략)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남양주시 고시 제2020-380호

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공원,전기공급설비)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일패근린공원)

1. 일패동 860-9번지 일원 일패사용종료매립장 근린공원 조성사업 시행중 공원조성 변경계획 및 경계측량 결과사항을 반영하여 공원을 조성하고자 입안한 도시관리계획(도로: 소로 일패1-1, 공원/122, 공원/146, 전기공급설비/8)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 9. 24.

남양주시장

1.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조서 및 사유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결정(변경)조서

| 구분 | 규모 | | | | 기능 | 연장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 | | | | |
| 기정 | 소로 | 일패1 | 1 | 10 | 국지 도로 | 305 | 일패동 산80-7 | 지금동 산43-14 | 일반 도로 | - | 남고 2010-13 6 (‘10.06.2 9.) | |
| 변경 | 소로 | 일패1 | 1 | 10 | 국지 도로 | 190 | 일패동 860-25 | 다산동 산3043-15 | 일반 도로 | - | - | |

나) 결정(변경) 사유서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소로 일패 1-1 | 소로 일패 1-1 | - 도로연장 축소 · 연장 : 305m → 190m(감115) · 면적 : 3,149㎡ → 2,629㎡(감520) | - 도로 부지의 표고차로 개설의 어려움이 있어 연장을 축소하고 공원 진입도로로 변경 - 진입부 도로 법면면적 반영 |

나. 공간시설

1) 공원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가) 결정(변경)조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m ²) |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 | |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 변경 | 122 | 공원 | 근린공원 | 일패동 860-9임 일원 | 43,377 | 증) 11,570 | 54,947 | 남양주시 고시 제2010-136호 (2010.06.29) | |
| 폐지 | 146 | 공원 | 근린공원 | 일패동 860-14임 일원 | 10,544 | 감) 10,544 | - | 남양주시 고시 제2010-136호 (2010.06.29) | |

나)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 표시번호 | 공원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122 | 일패 근린공원 | - 43,377m ² → 54,947m ² 증) 11,570m ² | - 공원면적 변경 43,377m ² → 54,947m ² 증) 11,570m ² |
| | | · 146공원의 편입 | · 경계가 접한 공원의 병합 |
| | | · 도로 일부 편입 · 철탑면적 증가 | · 도로 연장 축소 및 폭원변경 · 경계측량결과를 반영한 전기공급설비 면적 변경 |
| 146 | 일패 근린공원 | - 146 공원 폐지 | - 경계가 접한 공원과 병합 |

다. 유통공급설비

1) 전기공급설비

가) 결정(변경)조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m ²) |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 |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 변경 | 8 | 전기공급설비 | 일패동 860-14임 일원 | 326 | 증) 71 | 397 | - | |

나) 결정(변경)사유서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8 | 전기공급설비 | - 326m ² → 397m ² 증) 71m ² | - 공사 완료 후 경계측량결과 지적불합치로 인한 전기공급설비 위치 및 면적 변경 |

2. 도시관리계획결정도면 및 지형도면 : 따로 붙임(계재는 생략). 끝.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남양주시 별내동 고시 제2020-24호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 내용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사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 9. 24.

남양주시 별내동장

| | | |
|--------------|----------------------------|------------------------|
| 허가번호 | 2018-공유수면 | |
| 점·사용의 목적 | 골프연습장 부지 및 주차장 | |
| 점·사용의 장소 | 청학리 507-1, 469-1번지 | |
| 점·사용의 면적 | 650㎡ | |
| 점·사용의 기간 | 2020.01.01 ~ 2025. 12. 31. | |
|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 | 성 명 | 이** |
| |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507번지 |
| 기타사항 | | |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 | | |
|-----------------|----------------------|-----------------------|
| 허가번호 | 제2016-공유수면-8-2호 | |
| 점·사용의 목적 | 농지 | |
| 점·사용의 장소 | 별내동 2261-1, 2261-3번지 | |
| 점·사용의 면적 | 2372㎡ | |
| 점·사용의 기간 | 허가일 ~ 2022. 05. 31. | |
|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 | 성 명 | 이** |
| |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 688-6번지 |
| 기타사항 | | |

| | | |
|-----------------|---------------------|--|
| 허가번호 | 제2018-공유수면-15-1호 | |
| 점·사용의 목적 | 농지 | |
| 점·사용의 장소 | 별내동 2299-1번지 | |
| 점·사용의 면적 | 135㎡ | |
| 점·사용의 기간 | 허가일 ~ 2022. 05. 31. | |
|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 | 성 명 | 이** |
| |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 68번길 6, 504동 1004호 |
| 기타사항 | | |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남양주시 공고 제2020-1452호

평내지구 제9호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안) 주민공람공고

- 남양주시 평내동 592-1번지 일원 경기도 고시 제2000-267호(2000.11.04.)호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된 소공원의 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안)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2020. 9. 25. ~ 10. 8.
- 열람내용 : 공원조성계획(안)
- 열람장소 : 남양주시청 공원조성과, 당직실
 - 평일(AM 9:00 ~ PM 6:00) : 남양주 시청 공원조성과(☎ 031-590-8643)
 - 주말, 공휴일 : 남양주시청 당직실(031-592-4900)
-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를 위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본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9. 24.

남양주시장

가. 도시관리계획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m ²) | 최초결정일 | 비고 |
|-----|--------|----------------|-----------------------|------------------------------------|----|
| 공원 | 소공원 | 평내동 592-1번지 일원 | 1,115.9 | 경기도 고시 제2000-267호 (2000.11.04.) | - |

나.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 구 분 | 면 적(m ²) | 구 성 비(%) | 건축면적(m ²) | | 비 고 |
|---------|----------------------|----------|-----------------------|-----|-----------|
| | | | 바닥면적 | 연면적 | |
| 합 계 | 1,115.9 | 100 | | | |
| 시설면적 | 213.52 | 19.1 | - | - | 시설율 19.1% |
| 기반시설 | 소계 | 131.35 | 11.7 | - | - |
| | 도로 | 66.16 | 5.9 | - | - |
| | 광장 | 65.19 | 5.8 | - | - |
| 조경시설 | 24.62 | 2.2 | - | - | |
| 휴양시설 | 57.55 | 5.2 | - | - | |
| 공원관리시설 | - | - | - | - | |
| 녹지 및 기타 | 902.38 | 80.9 | - | - | |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남양주시 공고 제2020-1460호

시범취락(논골1, 동촌)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공람·공고(2차)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시범취락(논골1, 동촌) 주민의 불편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남양주시 고시 제2011-62호 및 남양주시 고시 제2011-262호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9. 24.

남양주시장

- 관계도서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 공람 및 의견 제출기간 : 2020.09.24. ~ 2020.10.07.(14일간)
- 공람장소
 - 평일(AM 9:00~PM 6:00) :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 (☎031-590-2354)
 - 주말, 공휴일 : 남양주시청 당직실(☎031-592-4900)
- 의견제출 : 관계도서를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는 분은 공람기간내 의견서를 남양주시청 도시개발과에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남양주시 와부읍 공고 제2020-179호

도로지정 폐지공고

건축법 제2조 및 동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를 폐지하고자 공고합니다.

2020. 9. 24.

남양주시 와부읍장

● 폐지내용

| 위치 | 지번 | 면적(m ²) | 소유자현황 | 비고 |
|---|---------------------------|---------------------|-------|----|
| 와부읍 팔당리 | 669-27 | 124 | 합지석 | |
| 도로폐지 사유 |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669-26부지로 편입 | | | |
| ※ 도로지정과 관련한 세부도면 등 상세한 사항은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 해관계자는 도로대장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 | |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남양주시 진접읍 공고 제2020-212호

도로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 및 동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로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2020. 9. 24.

남양주시 진접읍장

◎ 지정내용

| 도로지정 위치 | 지 번 | 면적(m ²) | 소유자 | 건축허가(신고)현황 |
|--|---|---------------------|-----|--|
| 남양주시 진접읍 진별리 | 523-14 | 28 | 정기○ | 2007-풍양출장소 -건축허가-123 (2007.11.09.) |
| | 합 계 | 28 | - | |
| 도로지정 사유 | 진접읍 진별리 523-14번지 상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편입 부분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규정에 의한 도로로 지정하고자 함. | | | |
| ※ 도로지정과 관련한 세부도면등 상세한 사항은 진접읍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자는 도로대장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 | |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남양주시 진건읍 공고 제2020-101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 9. 24.

남양주시 진건읍장

| | | | |
|---------------|---------------------------------------|--------------|---|
| 도로의 종류 | 도시계획도로 | 노선명 | |
| 점용의 목적 | 상수관로, 오수관로 매설 | 점용기간 | 2020.09.21. ~ 2029.09.30. |
| 점용의 장소 | 진건읍 배양리 152-3 | 점용면적 | 상수관로 임시점용 A=2.8㎡ 계속점용 A=0.05㎡ (D=25mm, L=2.0m) 오수관로 임시점용 A=4.2㎡ 계속점용 A=0.45㎡ (D=150mm, L=3.0m) |
| 점용물의 종류 | 상수관로, 오수관로 | 공사기간 | 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공사 방법 | 인력 및 기계굴착 | 굴착 시 교통대책 | 안전펜스, 삼각표지판, 교통안내판 등 |
| 도로의 복구방법 | 재포장 | 도로굴착 | - |
| 점용자의 주소·성명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414 (주)유성엔지니어링 유재근 | 그 밖의 사항 | - |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남양주시 금곡동 공고 제2020-125호

도로점용(굴착)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 9. 24.

남양주시 금곡동장

| | | | |
|-----------------|--|--------------|---------------------------------|
| 도로의 종류 | 도시계획도로 | 노선명 | - |
| 점용의 목적 | 통신관로 매설 | 점용기간 | 2020.09.10. ~ 2029.12.31. |
| 점용의 장소 | 금곡동 159-118, 159-115, 159-117, 442-3 일대 | 점용면적 | 일시면적 = 267.4㎡ 영구면적 = 22.1㎡ |
| 점용물의 종류 | 통신관로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일 간 |
| 공사 방법 | 굴착 | 굴착 시 교통대책 | 신호원 배치 등 |
| 도로의 복구방법 | 원상복구 | 도로굴착 | 당일굴착 당일복구 |
|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딜**브 **케이*티브* (남양주시 경춘로 12**) | 그 밖의 사항 | - |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 | | | |
|-----------------|--|--------------|---------------------------------|
| 도로의 종류 | 도시계획도로 | 노선명 | - |
| 점용의 목적 | 통신관로 매설 | 점용기간 | 2020.09.10. ~ 2029.12.31. |
| 점용의 장소 | 금곡동 159-118, 159-115, 159-117, 442-3 일대 | 점용면적 | 영구면적 = 27.04㎡ |
| 점용물의 종류 | 통신관로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일 간 |
| 공사 방법 | 굴착 | 굴착 시 교통대책 | 신호원 배치 등 |
| 도로의 복구방법 | 원상복구 | 도로굴착 | 당일굴착 당일복구 |
|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LG유플러스 (의정부시 신곡1동 720-*) | 그 밖의 사항 | - |

| | | | |
|-----------------|--|--------------|---------------------------------|
| 도로의 종류 | 도시계획도로 | 노선명 | - |
| 점용의 목적 | 통신관로 매설 | 점용기간 | 2020.09.10. ~ 2029.12.31. |
| 점용의 장소 | 금곡동 159-118, 159-115, 159-117, 442-3 일대 | 점용면적 | 영구면적 = 22.36㎡ |
| 점용물의 종류 | 통신관로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일 간 |
| 공사 방법 | 굴착 | 굴착 시 교통대책 | 신호원 배치 등 |
| 도로의 복구방법 | 원상복구 | 도로굴착 | 당일굴착 당일복구 |
|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SK브로드밴드(주) (서울시 중구 퇴계로 **) | 그 밖의 사항 | - |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 | | | |
|-----------------|---------------------------------|--------------|--|
| 도로의 종류 | 도시계획도로 | 노선명 | - |
| 점용의 목적 | 지반조사 | 점용기간 | 2020.09.10. ~ 2029.12.31. |
| 점용의 장소 | 금곡동 152-74번지 | 점용면적 | 영구면적 = 1.44㎡ 일시점용 = 20.0㎡ |
| 점용물의 종류 | 지반조사 | 공사기간 | 2020.06.19. ~ 2021.03.30. (기간 중 1일) |
| 공사 방법 | 굴착 | 굴착 시 교통대책 | 신호원 배치 등 |
| 도로의 복구방법 | 원상복구 | 도로굴착 | 당일굴착 당일복구 |
|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남양주시장(공원조성과) (남양주시 경춘로 1037) | 그 밖의 사항 | - |

| | | | |
|-----------------|---|--------------|---------------------------------|
| 도로의 종류 | 도시계획도로 | 노선명 | - |
| 점용의 목적 | 상수관로 매설 | 점용기간 | 2020.09.14. ~ 2029.12.31. |
| 점용의 장소 | 이패동 387-2번지 외 7필지 일패동 695-1,691-1 | 점용면적 | 영구면적 = 87㎡ 일시점용 = 209㎡ |
| 점용물의 종류 | 상수관로 | 공사기간 | 2020.06.19. ~ 2020.10.31. |
| 공사 방법 | 굴착 | 굴착 시 교통대책 | 신호원 배치 등 |
| 도로의 복구방법 | 원상복구 | 도로굴착 | 당일굴착 당일복구 |
|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자원공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 | 그 밖의 사항 | - |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 | | | |
|-----------------|--|--------------|--------------------------------------|
| 도로의 종류 | 도시계획도로 | 노선명 | - |
| 점용의 목적 | 금곡동 지중화사업 | 점용기간 | 2020.09.15. ~ 2029.12.31. |
| 점용의 장소 | 경춘로913~경춘로 995번길 1 사릉로 11 ~ 사릉로 41 | 점용면적 | 영구면적 = 1142.48㎡ 일시점용 = 2554.2㎡ |
| 점용물의 종류 | 통신관로 | 공사기간 | 2020.09.14.~2021.06.30 (기간중 150일) |
| 공사 방법 | 굴착 | 굴착 시 교통대책 | 신호원 배치 등 |
| 도로의 복구방법 | 원상복구 | 도로굴착 | 당일굴착 당일복구 |
|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분부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19번길 *) | 그 밖의 사항 | - |

| | | | |
|-----------------|--|--------------|-------------------------------------|
| 도로의 종류 | 도시계획도로 | 노선명 | - |
| 점용의 목적 | 급수공사를 위한 상수관로 및 오수관로 설치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복합개발사업) | 점용기간 | 2020.09.17. ~ 2029.12.31. |
| 점용의 장소 | 금곡동 688-1, 688-4 | 점용면적 | 영구면적 = 0.36㎡ 일시점용 = 9.5㎡ |
| 점용물의 종류 | 상수관로 및 오수관로 | 공사기간 | 2020.09.17.~2020.10.30 (기간 중 7일) |
| 공사 방법 | 굴착 | 굴착 시 교통대책 | 신호원 배치 등 |
| 도로의 복구방법 | 원상복구 | 도로굴착 | 당일굴착 당일복구 |
|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남양주시장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 그 밖의 사항 | - |

남 양 주 시 보

제1860호

남양주시 다산1동 공고 제2020-64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 9. 24.

남양주시 다산1동장

| 도로의 종류 | 국도 | 노선명 | 6호선 |
|-----------------|--------------------------------|--------------|----------------------------------|
| 점용의 목적 | 상수관로 인입공사 | 점용기간 | 2020. 09. 16. ~ 2029. 12. 31. |
| 점용의 장소 | 도농동 249-2번지 일원 | 점용면적 | 계속점용 1.35㎡ (Ø75mm × 18m) |
| | | | 일시점용 26㎡ (1.44m × 18m) |
| 점용물의 종류 | 상수관 | 공사기간 | 2020. 09. 16. ~ 2021. 06. 30. |
| 공사 방법 | 노면굴착시공 | 굴착 시 교통대책 | 신호수 배치 및 통제시설물 설치 |
| 도로의 복구방법 | 원인자 원상복구 | 도로굴착 | 당일굴착 당일복구 |
| 점용자의 주소 · 성명 | 남양주시장(체육과) 경기도 남양주 경춘로 1037 | 그 밖의 사항 | |